

공정위, 3개 일반건설사 불공정 하도행위 적발

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이나 하도급 서면계약을 지급하지 않은 3개 건설사를 적발, ○○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, □□건설, △△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.

공정위 조사결과 ○○건설은 경북 포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대 토목공사 등 3개 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법정기한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억3천45만원 과 지연이자 5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음할인료 1천258만원도 주지 않았다.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명기한 서면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.

□□건설은 서울 관악구 소재 □□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하도급대금 3천75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행치 않았다.

△△건설도 강원도 삼척시 음상지구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, 하도급대금 2천809만원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최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 ②